보도자료3

2023년 세법개정안 문답자료

2023. 7. 27.

기 획 재 정 부

목 차

Ⅰ. 경제활력 제고

1. 투자·고용 촉진

(1-1)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 ····· 1
①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····· 1
② 추가공제 적용을 위한 구체적인 요건은? ····· 1
(1-2)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신설 ····· 2
①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····· 2
②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대한 출자로 한정한 이유는? ····· 2
(2)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·원천기술 확대 ····· 3
① R&D 세액공제 개요 ····· 3
② 통합투자세액공제 개요 ····· 3
(3)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(리쇼어링) 지원 강화 ····· 4
① 개정 취지 및 개정 내용 ····· 4
② 기대효과 ····· 4
(4) 신재생에너지 생산·이용 기자재 관세감면 적용기한 연장 ····· 5
①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····· 5
② 감면 적용품목 ····· 5
(5) 우수인력의 국내유입 지원 ····· 6
①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과세특례 제도 개요 ····· 6
② 사택제공이익 관련 개정 이유 ····· 6

2. 기업경쟁력 제고

(1) 가업승계에 따른 세부담 완화 ····· 7
① 현행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개요 ····· 7
② 추진 배경 ····· 7
③ 가업승계시 연부연납 기간을 확대(5→20년)하는 이유는? ····· 8
④ 가업상속·승계 사후관리 요건 중 업종변경 허용범위를 '중분류→대분류' 내로 확대하는 이유는? ····· 8
(2) 해외건설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특례 신설 ····· 9
① 제도 개요 ····· 9
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····· 9

(3)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의 시행시기 조정 ····· 10
① 글로벌최저한세 개요 ····· 10
② 국가별 실효세율·추가세액 계산방식 및 적용 예시 ····· 11
③ 소득산입규칙 적용 예시 ····· 12
④ 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 예시 ····· 12
⑤ 소득산입보완규칙의 시행시기 1년 유예 배경 ····· 13
(4) 대학의 수익용 자산 대체취득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····· 14
① 현행 제도개요 ····· 14
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····· 14
(5)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범위 합리화 ····· 15
① 현행 제도개요 ····· 15
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····· 15
(6)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····· 17
① 현행 제도개요 ····· 17
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····· 17

3. 창업·벤처 활성화

(1)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확대 ····· 18
① 직무발명보상금 과세제도 개요 ····· 18
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····· 18
(2) 기술혁신형 M&A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····· 19
① 현행 제도 개요 ····· 19
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····· 19

Ⅱ. 민생경제 회복

1. 서민·중산층 부담 완화

(1)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····· 20
① 제도 개요 ····· 20
② 개정 취지 및 개정 내용 ····· 20
(2) 전통시장 및 문화비 사용분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····· 21
①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개요 ····· 21
② 개정 내용 ····· 21

(3)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····· 22
① 기부금 세액공제 개요 ····· 22
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····· 22
(4) 반려동물 동물병원 진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····· 23
①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은? ····· 23
② 100대 다빈도 질병에 실제 반려동물 진료항목의 대부분이 포함되는지? ···· 23
(5) 맥주·탁주 종량세 물가연동제 폐지 및 세율조정방식 개선 ····· 24
① 개정 취지 ····· 24
② 현행 방식과의 차이점 ····· 24
2. 소상공인·중소기업 지원
(1) 전통시장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한도 확대 ····· 25
① 현행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한도 개요 ····· 25
② 개정내용 및 개정취지 ····· 25
(2) 개인택시용 자동차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신설 ····· 26
① 환급제도 신설 배경 ····· 26
② 환급제도 개요 ····· 26
(3)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특례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····· 27
① 제도 개요 ····· 27
② 개정취지 및 개정내용 ····· 27
Ⅲ. 선제적 미래 대비
1.결혼·출산·양육 지원
(1)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 ····· 28
① 도입 배경 ····· 28
② 혼인 증여재산 공제 적용 시 줄어드는 세부담은? ····· 29
③ 재산용도 제한을 하지 않은 이유 ····· 29
④ 공제기간을 혼인 전 2년, 후 2년 이내로 설정한 이유 ····· 30
(2)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····· 31
① 자녀장려금(CTC) 개요 ····· 31
② 자녀장려금 확대 배경 및 내용 ····· 32
③ 자녀장려금 대상인원 확대 및 지급금액 증가 효과 ····· 32

(3-1) 출산·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····· 33
① 개정이유 및 효과 ····· 33
(3-2) 근로자 출산·양육 지원금액 손금·필요경비 인정 근거 마련 ····· 33
① 제도 개요 ····· 33
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····· 33
(4)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····· 34
① 제도개요 ····· 34
② 개정내용 및 이유 ····· 34

2. 청년 자산형성 및 노후대비

(1) 저축지원 금융상품 가입대상 확대 ····· 35
① 개정 취지 ····· 35
(2) 저축지원 금융상품 가입시 소득요건 기준연도 개선 ····· 36
① 개정 취지 ····· 36
② 적용시기 ····· 36
(3)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전환가입 허용 ····· 37
① 개정 취지 ····· 37
(4) 노후 연금소득에 대한 세부담 완화 ····· 38
① 제도개요 및 개정내용 ····· 38
② 세부담 완화 배경 ····· 38

Ⅳ.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

1. 납세자 권익 보호

(1) 조세불복 관련 소액사건 범위 확대 ····· 39
① 제도 개요 ····· 39
② 개정 취지 및 개정 내용 ····· 39
(2) 수정신고시 관세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확대 ····· 40
① 제도 개요 ····· 40
② 개정 취지 및 개정 내용 ····· 40
(3) 수출입물품 검사 수수료 폐지 ····· 41
① 제도 개요 및 수수료 폐지 이유 ····· 41

(4) 부동산 양도소득세 알기 쉽게 새로 쓰기 ····· 42
① 개정이유 ····· 42
② 개정내용 ····· 43

2. 조세회피 관리 강화

(1) 해외신탁 자료 제출의무 부여 ····· 44
① 제도 개요 ····· 44
② 신탁재산가액의 평가방법 ····· 44
(2) 임직원 국외 주식기준보상 거래내역 등 제출의무 부여 ····· 45
① 도입 이유 ····· 45
② 제도 개요 ····· 45
(3) 매입자 납부특례 적용대상 확대 ····· 46
① 매입자납부특례 제도 내용 ····· 46
② 매입자납부특례 적용대상 확대 배경 ····· 46
(4) 우회덤핑 방지제도 도입 ····· 47
① '우회덤핑'의 의미 ····· 47
② 우회덤핑 방지제도 도입 배경 ····· 47
(5) 관세포탈 등 명단공개 대상 확대 ····· 48
① 제도 개요 ····· 48
② 개정 취지 및 개정 내용 ····· 48
③ 납세자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····· 48
(6) 세법상 주택 개념 정비 ····· 49
① 개정취지 및 개정내용 ····· 49
② 주택개념 구체화로 세부담에 변화가 있는지? ····· 50
③ 적용시기 ····· 50
(7) 원산지인증수출자 자격신청 시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보완 ····· 51
① 제도보완 취지 ····· 51

3. 과세형평 제고 및 기반 강화

(1)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확대 ····· 52
① 현금영수증 발급 시 혜택은? ····· 52
②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경우는? ····· 52

(2) 플랫폼 종사자의 소득파악 기반 공고화 ····· 53
①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소액부징수 개요 ····· 53
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····· 53
(3)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범위 합리화 ····· 54
① 제도 개요 ····· 54
② 개정내용 및 개정취지 ····· 54

V. 기타

(1) 연결납세방식 조기 포기 허용 예외사유 신설 ····· 55
① 연결납세 제도 개요 ····· 55
② 연결납세방식의 포기 ····· 55
(2)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필요경비 합리화 ····· 56
① 제도 개요 ····· 56
② 제도 효과 ····· 56
(3) 간이과세 포기 철회 근거 마련 ····· 57
① 간이과세 제도 개요 ····· 57
② 간이과세 포기 철회 도입 취지 ····· 57
(4) 천연가스 버스에 대한 부가세 면제 특례 적용기한 종료 ····· 58
① 천연가스(CNG) 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종료 취지 ····· 58
(5)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 확대 ····· 59
①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개요 ····· 59
② 개정 취지 ····· 59
(6) 용도세율 대상 확대 등 제도개선 ····· 60
① 제도 개요 ····· 60
② 개정 내용 ····· 60
(7) FTA협정관세 적용 물품의 보정이자 면제사유 명확화 ····· 61
① 보정제도 개요 ····· 61
② 개정 취지 ····· 61
(8) 공매제도 개요 ····· 62
① 제도 개요 ····· 62
② 공매 절차 ····· 62
(9) 공매재산 취득 시 매수대금의 상계제도 신설 ····· 63
① 도입취지 및 내용 ····· 63
② 제도 개요 ····· 63

Ⅰ 경제 활력 제고

1. 투자 · 고용 촉진

[1-1]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 (상세본 1p)

①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

□ **(개정 내용)**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**기본공제율을 상향**하고, 국내산업 **파급효과가 큰 영상콘텐츠*** 대상으로 **추가공제**(10/15%) 신설

* (예) 총 제작비용 중 국내지출 비중이 일정 비율 이상인 영상콘텐츠 등

구 분	기본공제			추가공제		최대 공제율
	현 행		개정안			
대기업	3%	→	5%	10%	⇨	15%
중견기업	7%	→	10%	10%		20%
중소기업	10%	→	15%	15%		30%

□ **(개정 취지)** **세액공제율**을 해외 주요국 수준*으로 **상향**하여 **글로벌 경쟁력 제고**를 통해 영상콘텐츠 산업을 **주요 전략산업**으로 육성

* (미국·프랑스) 20~30%, (독일·영국) 20~25%, (캐나다) 25% 등

② 추가공제 적용을 위한 구체적인 요건은?

□ **국내 콘텐츠산업 경쟁력 제고**를 위해 **국내산업 파급효과**(투자·고용 등)를 감안한 **항목으로 구성**

※【주요국 영상콘텐츠 세제지원 요건】
(미 캘리포니아) 총 제작비 75% 이상 州내 지출, (프랑스) 자국 내에서 프랑스어로 제작, (영국) 주요 제작자 내국인 비율 등, (호주) 자국 지출비용에 한정

□ **구체적인 요건**은 **관련 부처, 업계**와 **협의**해나갈 예정이며, **후속 시행령 개정안**에서 **확정·발표할 계획**

[1-2]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신설

(상세본 2p)

①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

□ **중소·중견기업**이 **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**를 통해 **영상콘텐츠** 제작에 투자한 경우 해당 **투자액**에 대해 **법인세 세액공제 신설**

⇨ **양질의 영상콘텐츠 제작 기반 확대**를 위해 **민간 투자 유인책을 마련**하여 **투자재원 확충**

②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대한 출자로 한정한 이유는?

□ **문화산업전문회사***는 **특정 프로젝트**(영상콘텐츠 등) **수행**만을 목표로 **자산을 운영**하여 **자금운영의 투명성 확보** 가능

* 「문화산업법」에 따라 자본 납입증명서, 사업계획서, 자산관리계약서 등 등록 필요

[2]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·원천기술 확대 (상세본 3p)

① R&D 세액공제 개요

□ 기업 **연구·인력개발비***의 **일정 비율 세액공제**

* (공제대상) 기업부설연구소,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발생한 인건비, 재료비, 시설임차료 등

구분	일반		신성장·원천기술	국가전략기술
	당기분	증가분		
중소기업	25%	50%	30~40%[1)]	40~50%[2)]
중견기업	8~15%	40%	20~30%[1)] (코스닥 상장 25~40%)	30~40%[2)]
대기업	최대2%	25%	20~30%[1)]	

1) 20%(중소기업 30%) + 최대 10%{ (신성장 R&D 지출액 / 매출액) x 3 }
2) 30%(중소기업 40%) + 최대 10%{ (국가전략기술 R&D 지출액 / 매출액) x 3 }

② 통합투자세액공제 개요

□ **기업의 사업용 설비와 시설 등**(토지, 건물 등 제외)에 대한 **투자금액**의 일정 비율 **세액공제**(기본공제+추가공제)

투자세액공제율(%)

구 분	당기분(기본공제)				증가분 (추가공제)
	대기업	중견기업	중소기업		
일 반	1 → 3	5 → 7	10 → 12	+	3 → 10
신성장·원천기술	3 → 6	6 → 10	12 → 18		
국가전략기술	15	15	25		4 → 10

* ▭ : 임시투자세액공제('23년 한시 적용)

※ 총 투자세액공제액 = (투자액 × 당기분 공제율) + (3년평균대비 투자 증가분 × 증가분 공제율)

1) 국가전략기술 : 6개 분야*, 54개 기술, 46개 시설

* ①반도체, ②이차전지, ③백신, ④디스플레이, ⑤수소, ⑥미래형이동수단 (+ ⑦바이오의약품 추가 예정)

2) 신성장·원천기술 : 13개 분야*, 262개 기술, 185개 시설

* ①미래차, ②지능정보, ③차세대 SW 및 보안, ④콘텐츠, ⑤차세대 전자정보디바이스, ⑥차세대 방송통신, ⑦바이오·헬스, ⑧에너지·환경, ⑨융복합 소재, ⑩로봇, ⑪항공·우주, ⑫첨단소재·부품·장비, ⑬탄소중립

[3]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(리쇼어링) 지원 강화 (상세본 5p)

① 개정 취지 및 개정 내용

□ **(개정 취지)** ❶**국제 경제질서 변화** 및 ❷**산업혁신 가속화**에 따라 해외진출기업의 **국내복귀**에 대한 **지원 강화 필요성 증대**

❶ 미·중·러 등 선진국의 **자국 우선주의 확산** 및 핵심산업·자원 **공급망 확보 경쟁 심화**에 따른 **국내산업 공급망 안정 필요성 증대**

❷ 현행 유턴기업 **업종요건**(세분류 상 동일업종)은 사업구조 전환이 빈번한 **산업현장**에 **탄력적 대응 곤란***

* (예시) 내연기관차 부품 기업(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)과 전기자동차 부품 기업(전기장비 제조업)은 중분류 상 업종 상이
→ 자동차 부품기업이 사업구조 전환(내연차 부품 제조 → 전기차 부품 제조)을 수반한 국내복귀 시 세액감면 적용불가

□ **(개정 내용)** 유턴기업 ❶**세액감면 기간 확대** 및 ❷**업종요건 완화**

❶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복귀 시 **최대 10년간 소득·법인세 감면**

* (현행) 5년 100% + 2년 50% 감면 → (개정) **7년 100% + 3년 50% 감면**
(※ 수도권 안으로 부분복귀 시에는 현행과 동일하게 3년+2년 감면)

❷ 국내복귀 후 **세분류 상 다른 업종**을 영위하더라도, 산업부 전문위원회*에서 **업종 유사성을 인정**한 경우에는 **세액감면 적용**

* 「해외진출기업복귀법」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

② 기대효과

□ **국내복귀 유인효과** 및 유턴기업 지원세제 **유연성 제고**를 통한 해외진출기업의 **국내복귀 활성화**로 **국내 투자·고용 창출 증대**

[4] 신재생에너지 생산 · 이용 기자재 관세감면 적용기한 연장

(상세본 8p)

①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

□ RE100 등 **전 세계적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 추세**로 **국내 신재생에너지 생산·이용기반 강화**를 위해 **'26년 말**까지 **연장 적용**

* RE100 선언 : 기업 사용 전력량의 100%를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로 충당한다는 목표의 캠페인. 애플 등 일부 회원사가 납품업체에 RE100 이행 요구

○ **중소·중견기업**이 수입하는 것으로서 **신재생에너지 생산·이용**에 **필수적**이나 **국내제작**이 **어려운 물품**의 **관세**를 **감면**(50%)

② 감면 적용품목

□ **태양광에너지**(1개), **풍력에너지**(13개), **수소·연료전지**(2개) **생산·이용 기자재 총 16개** 물품에 대하여 **관세감면 적용 중**(조특칙 별표13)

○ 개정 이후 **관계부처**(산업부), **업계**(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등)를 통해 **대상품목 정비 필요성**에 대한 **의견수렴** 및 **후속조치 예정**

[5] 우수인력의 국내유입 지원 (상세본 9p)

①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과세특례 제도 개요

□ **외국인근로자**에게 종합소득세율이 아닌 **19% 단일세율 적용**

○ 단, **비과세, 공제, 감면 및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음**

② 사택제공이익 관련 개정 이유

□ '21년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개정시 **사택제공이익**을 '**과세 제외 소득**'에서 '**비과세 소득**'으로 변경

○ 이에 따라 단일세율 특례를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의 **근로소득에 사택 제공으로 인한 이익을 과세대상에 포함**되는 결과 발생*

* 단일세율 특례적용시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사택 제공이익이 과세대상에 포함된 것임

○ 그간 **부칙을 통해서 근로소득에서 제외**하였으나, 이번 개정을 통하여 **항구적으로 제외하려는 것임**

2. 기업경쟁력 제고

[1] 가업승계에 따른 세부담 완화 (상세본 14p)

① 현행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개요

□ 자녀가 부모로부터 **가업승계 목적**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 최대 **600억원*** **한도**로 10**억원 공제** 후 **10%** (증여재산가액 60억원 초과시 20%) **증여세율** 적용

* 한도(억원) : 업력 10년 이상 300 / 20년 이상 400 / 30년 이상 600

○ 증여일로부터 **5년간 가업유지** 등 **사후관리 의무**를 **부여**하고, **위반시 증여세 및 이자상당액 부과**

○ 가업승계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시점에 관계없이 **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**하여 **정산**하며, 상속시점에 **가업상속공제 적용 가능**

<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주요내용 >

구 분	내 용
대 상	○ 중소기업 및 매출액 5,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
특 례	○ 대상자산: 가업기업의 **주식** ○ 내용: 증여재산가액 **최대 600억원 한도**로 **10억원 공제** 후 잔액에 대해 **10%(과표 60억원 초과시 20%) 증여세율** 적용
사후관리 (5년)	○ **3년** 이내 **대표이사 취임**, **5년** 이상 **가업 경영** ○ **업종변경 제한:** 표준산업분류상 **중분류 내 변경 허용** ○ **지분유지:** 증여받은 지분 유지

② 추진 배경

□ 중기중앙회·중견기업연합회 등 **현장의 목소리**를 **수렴**하여 중소·중견기업의 영속성을 지원하기 위해 **가업승계 제도** 개선

○ **OECD 최고수준 세율*** 등 감안, **가업승계**에 따른 **세부담** 완화

* 증여세 최고세율(%): (일) 55 **(한) 50** (프) 45 (미) 40 (독) 30 (영) 20 **(OECD평균) 26**

○ **CEO 고령화***로 인해 **생전 가업승계**에 대한 **필요성** 확대

* 중소기업 대표의 65.3%가 60세 이상(2022년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, 중기중앙회)

○ **대표이사 취임, 가업경영 및 지분유지 등 사후관리 의무를 준수**해야 하는 만큼, **제도 본래의 취지 달성**에 **문제없음**

③ 가업승계시 연부연납 기간을 확대(5→20년)하는 이유는?

□ **가업승계 초기** 과도한 **증여세 납부 부담 완화**를 위해 증여세 **연부연납 기간 확대**

○ **가업상속공제에 적용되는 연부연납 기간이 20년**인 점을 감안하여 **동일한 수준으로 확대**

④ 가업상속·승계 사후관리 요건 중 업종변경 허용범위를 '중분류'→ '대분류' 내로 확대하는 이유는?

□ 승계기업이 **급변하는 산업구조 및 기업환경**에 **유연하게 대응**할 수 있도록 **업종변경**의 **범위**를 **확대***하려는 것임

* (현행)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 허용 → (개정안) 대분류 내 허용

○ 가업상속·승계 후 **사후관리기간(5년)** 동안 **대분류 내**에서 **자유로운 업종변경 가능**

- 예를 들어, 현재 **'플라스틱 욕실자재'**(중분류 22) 제조 업체가 **'절수형 양변기'**(중분류 23)로 제조품목 변경시 **중분류 간 변경으로 허용되지 않으나, 제도개선시 업종 변경 가능**

< **중분류 내 업종변경 애로 사례** (자료 : 중소기업중앙회) >

▸ **플라스틱 욕실자재**(중분류 22) → **절수형 양변기**(중분류 23)

▸ **전기차 축전지**(중분류 28) → **자동차 부품제조**(중분류 30)

▸ **전자부품 제조**(중분류 26) → **산업용 로봇**(중분류 29)

(2) 해외건설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특례 신설

(상세본 16p)

① 제도 개요

□ **(대손금)** 채권 소멸시효의 완성, 채권자의 파산 및 사업의 폐지 등으로 **회수 불가능한 채권**은 **대손금**으로 **손금** 처리

□ **(대손충당금)** 채권의 **대손으로 인하여 추후 발생할 비용 또는 손실**을 추정하여 **충당금으로 계상**하여 **손금에 산입**

※ 채권의 대손확정 시 대손충당금과 상계

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

□ **대손충당금 손금산입한도 특례 신설**

○ **국내건설모법인**이 **해외건설자회사에 사업용도로 지급한 대여금**(이자 포함)의 회수가 곤란한 경우 **해당 대여금에 대해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특례 도입**

⇨ 국내건설모회사의 **채권 회수가 어려운 상황**에서 **비용으로도 인정하지 못하는 문제**를 **해소**하고, **해외건설사업 수주 지원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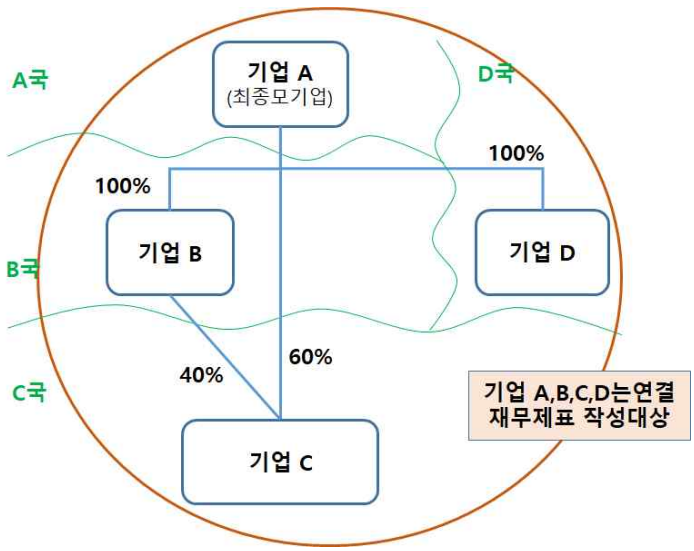
[3]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의 시행시기 조정 (상세본 17p)

① 글로벌최저한세 개요

◇ 다국적기업그룹의 소득에 대해 특정 국가에서 최저한세율(15%)보다 낮은 세율 적용시 다른 국가에 추가 과세권 부여

□ **(대상)** 연결매출액 7.5억 유로(약 1조원) 이상 다국적기업그룹

< 예시 >



- 각 **개별기업A, B, C, D**는 지배종속관계로 **연결된 그룹**
- **기업A는** 기업B·C·D를 직·간접적으로 지배하는 **최종모기업**
- **기업그룹(A·B·C·D)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7.5억 유로 이상**이면 **글로벌 최저한세의 적용 대상**

□ **(납세액)** 국가별 실효세율(=조정대상조세/글로벌최저한세소득)을 기준으로 최저한세율(15%)에 미달하는 만큼 추가세액 부과

※ 추가세액 = (최저한세율 - 국가별 실효세율)
× (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 - 실질기반제외소득*)

* 실질 사업활동 지표(유형자산 및 급여)에 고정율(5%)을 적용하여 공제

② 국가별 실효세율·추가세액 계산방식 및 적용 예시

□ 국가별 실효세율·추가세액 계산방식

❶ 국가별로 구성기업들의 **조정대상조세** 합계를 **글로벌최저한세 소득·결손**의 **합계**(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)로 나누어 **실효세율** 계산

*** 실효세율 = (조정대상조세 합계) ÷ (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)**

❷ **실효세율**이 **최저한세율**(15%)에 **미달**(저율과세 국가)하는 경우, 미달하는 세율에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을 곱하여 **추가세액 계산**

*** 추가세액 = (최저한세율(15%) - 실효세율) ×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**

※ 실질기반제외소득('급여'와 '유형자산 순장부가액'의 일정비율(5%))을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음

□ 적용 예시

○ X국에 소재한 A기업은 최종모기업으로, Y국에 소재한 자회사 B1과 B2를 소유하고 있고, 각 기업의 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음

	A기업	B1기업	B2기업
❶법인세비용	200	50	45
❷조정사항(자본에 계상된 조세 등)	50	5	-
❸조정대상조세(❶+❷)	250	55	45
❹당기순이익	800	450	255
❺조정사항(조세비용 등)	200	50	45
❻글로벌최저한세소득(❹+❺)	1,000	500	300

○ A기업의 **자회사들이 소재**하는 **Y국의 실효세율은 12.5%** (=(55+45)❸÷(500+300)❻), **추가세액은 20**(=(최저한세율15%-12.5%)×(500+300)❻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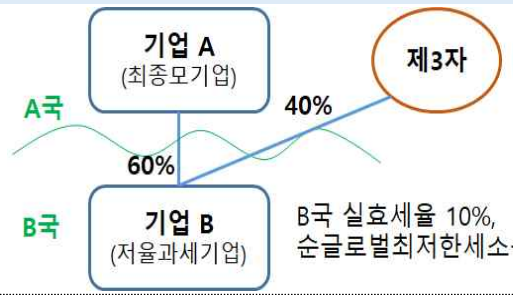
③ 소득산입규칙 적용 예시

□ **(최종모기업) 최종모기업**(Ultimate Parent Entity)은 **모든 저율과세 구성기업**의 **추가세액**을 우선적으로 부담

○ 모기업은 저율과세 구성기업의 추가세액 중 **소득산입비율***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

$$\text{* 소득산입비율} = 1 - \frac{\text{모기업 외의 다른 소유자가 보유하는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저율과세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}}{\text{저율과세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}}$$

< 예시 >



① 기업B 추가세액 = (15%-10%) × 100 = 5

② 기업A의 기업B에 대한 소득산입비율 = (100-40)÷100 = 60%

∴ 기업A는 5 × 60% = 3만큼 A국 과세당국에 납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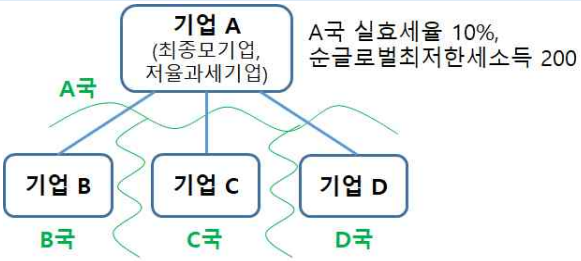
④ 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 예시

□ **최종모기업이 저율과세**되거나 **모기업 소재국**이 **소득산입규칙을 도입하지 않은** 경우 적용

○ 저율과세 구성기업들의 **추가세액**을 **소득산입보완규칙**을 **도입**한 **국가에 납부**

○ 소득산입보완규칙에 따른 추가세액은 각 국가의 **종업원 수**와 **유형자산 순장부가액의 비율**에 따라 **각 국가로 배분**

< 예시 >



	B국	C국	D국	합계
종업원 수	70	20	10	100
유형자산	30	40	30	100

① 기업A 추가세액 = (15%-10%) × 200 = 10

② A국은 글로벌최저한세제도 미도입, B~D국은 도입

③ 배분비율
- B국 = 50%×0.7 + 50%×0.3 = 50%
- C국 = 50%×0.2 + 50%×0.4 = 30%
- D국 = 50%×0.1 + 50%×0.3 = 20%

∴ 기업B는 5, 기업C는 3, 기업D는 2를 각각 B국, C국, D국 과세당국에 납부

⑤ 소득산입보완규칙의 시행시기 1년 유예 배경

□ **소득산입보완규칙**(UTPR)의 시행을 주요국의 **시행**시기에 맞춰 **1년 유예**('24.1.1. → '25.1.1.)

○ **소득산입보완규칙**을 **다른 나라보다 먼저 도입**시, 국내 외투기업에 대해 먼저 과세하여 **국내 투자환경**에 대한 **불안정성 우려**

○ 또한, **소득산입보완규칙**은 **한국**을 **제외**한 **모든 글로벌최저한세 도입**예정 **국가***가 **'25년 또는 그 이후 시행**을 **예정**

* EU, 영국, 일본, 캐나다, 싱가포르, 홍콩, 호주, 뉴질랜드 등

※ 다만, **소득산입규칙**(IIR)은 현행대로 **'24.1.1. 시행**

○ 한국이 **소득산입규칙**(IIR)의 **시행**을 **늦추는 경우**, 해외진출 국내 기업에 대한 **과세권**을 **상실**함에 따라

- **국내기업이 한국에 납부할 세액**을 소득산입규칙(IIR)을 도입한 **다른 나라에 납부**하는 상황* 발생 가능

* '24년 IIR을 도입한 국가에 소재한 국내기업의 중간모기업의 자회사가 저율과세 기업으로 추가세액 발생시 → 한국에 납부할 세액을 IIR도입한 국가에 납부

(4) 대학의 수익용 자산 대체취득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

(상세본 18p)

① 현행 제도 개요

□ **대학**이 **수익용 기본재산 매각** 후 **새로운 수익용 기본재산 취득** 시에는 **매각차익**에 대해 **영리법인**과 동일하게 **법인세 과세**

□ **대학 재정 건전화**를 위해 **수익용 기본재산** 중 **토지 · 건축물**을 처분하고 **새로운 토지 · 건축물**을 **취득**하는 경우에는 **양도차익**에 대해 **3년 거치 3년 분할익금** 적용 중

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

□ **대학의 수익용 기본 재산 대체취득**에 대한 **세제지원 확대**

○ 현재 **저수익 자산 처분** 후 **고수익 자산 대체취득**시 양도차익에 대한 **법인세 부담**이 발생하여 **저수익 자산**을 **지속 보유**하는 상황

○ 따라서 **고수익 자산**으로의 **대체취득**을 **지원**하기 위해 **기존 자산**의 **양도차익**에 대해 **대체취득 자산 처분시까지 과세이연**

- 아울러, 과세이연 대상 **수익용 기본재산 범위**에 토지 · 건축물 외에 **유가증권 추가**

구 분	현 행	개정안
대상자산	토지, 건축물	토지, 건축물, **유가증권**
취득시기	1년 이내	**2년 이내**
과세방식	3년 거치 3년 분할익금	**처분시까지 과세이연**

⇨ **대학**의 적극적인 **재정 확충 노력 지원**

[5]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범위 합리화 (상세본 19p)

① 현행 제도 개요

□ (**동업기업 과세특례**) **법인 단계**에서 **법인세**를 **과세하지 않고** **법인소득**을 **주주**에게 배분하여 **주주 단계**에서 **소득·법인세 과세**

○ **기관전용 사모펀드** 등이 **동업기업 과세특례**를 **주로 활용**하여 **사모펀드 단계**에서는 **과세하지 않고 출자자 단계**에서 **과세**

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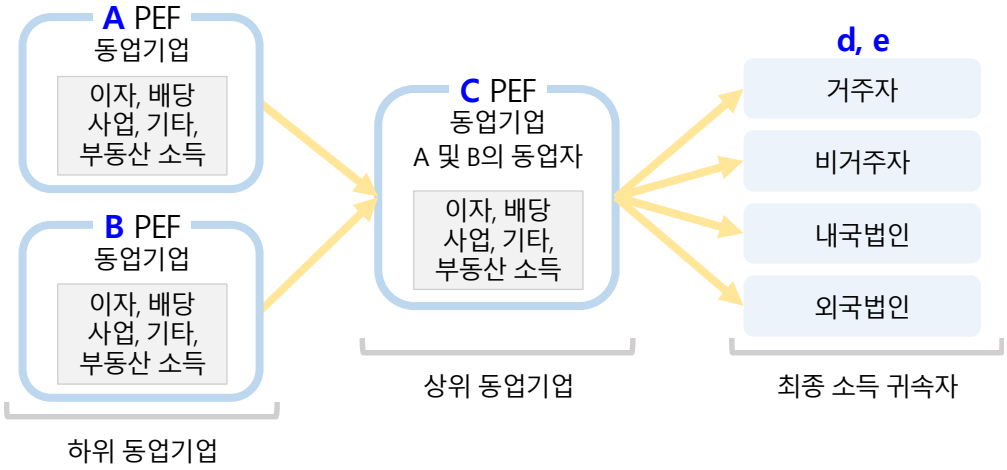
□ **모펀드-자펀드 구조**로 **투자**하는 경우 **자펀드 소득**에 대해 **모펀드**의 **출자자 단계에서만 소득·법인세 과세**

○ **투자자명부** 및 **소득배분** 등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**기관전용 사모펀드**에 한하여 허용

⇨ **기업구조혁신펀드***(4호)에 대한 **과세특례**를 통해 **기업구조조정 활성화 지원**

* 산은, 수은 등 → 기업구조혁신펀드[모펀드] → 민간 자펀드
<1차 출자> <2차 출자>

〈 동업기업 과세특례 중복 적용 관련 규정 〉



① → ② : ①이 ②에게 이익 및 손실을 배분 (이익 및 손실이 배분되는 방향)
: ②가 ①에게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, 노무 등 출자

□ 동업기업 소득금액 · 결손금의 계산(조특법 §100의14)

○ **하위 동업기업**의 **소득금액 · 결손금**에 대한 **상위 동업기업**의 **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 · 결손금**(=①×②×③)

* ① 하위 동업기업의 동업자군별 동업기업 소득금액 및 결손금
(하위 동업기업을 하나의 거주자/비거주자/내국법인/외국법인으로 보아 계산)
② 상위 동업기업의 손익배분비율
③ 상위 동업기업의 동업자군별 손익배분비율

□ 동업기업 소득금액 · 결손금의 구분(조특령 §100의18)

○ **하위 동업기업**의 **소득금액 · 결손금**은 **상위 동업기업**의 **동업자군별 소득금액 · 결손금 구분**에 따라 **상위 동업기업**에 **배분**

□ 동업기업 결손금의 배분(조특법 §100의18)

○ **결손금 배분 규정***은 **하위 동업기업**이 **상위 동업기업**에, **상위 동업기업**이 **그 동업자**에게 **배분**시에도 **동일하게 적용**

* (수동적 동업자) 결손금 배분 불가 (능동적 동업자) 동업자 지분가액 한도로 배분 등

□ 동업기업 관련 세액의 배분(조특법 §100의18)

○ **상위 동업기업**의 **손익배분비율** 및 **상위 동업기업**의 **동업자 간 손익배분비율**에 따라 **상위 동업기업**의 **동업자**에게 **세액 배분**

[6]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

(상세본 20p)

① 현행 제도 개요

□ 주주가 **주식을 현물출자하여** ①**지주회사*를 설립**하는 경우 또는 ②**지주회사에 새롭게 자회사를 편입**하는 경우 발생하는 **주식 양도차익**에 대해 **과세이연**(조특법 §38의2)

* 주식 소유를 통한 국내회사의 사업내용 지배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회사(공정거래법 §2)

□ **현행 규정상 올해 말까지 현물출자한 주식의 양도차익**에 한해 **지주회사 주식 처분 시**까지 **과세이연 적용**

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

□ 지주회사 현물출자 **과세이연 특례 적용기한**을 **2026년 12월 31일**까지 **3년 연장**

⇨ 기업집단의 **소유·출자구조의 투명성 제고** 등 기업의 **지주회사 전환**을 **지원**

3. 창업 · 벤처 활성화

(1)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확대 (상세본 21p)

① 직무발명보상금 과세제도 개요

□ 직무발명보상금 종류(출원·등록·실시 등)에 관계없이 **근로기간 중** 받는 부분은 **근로소득**, **퇴직 후** 받는 부분은 **기타소득** 과세

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

□ **(개정 내용)** 비과세 한도를 **연간 500만원 → 700만원으로 상향**하고, **지배주주등을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**

□ **(개정 취지)** 근로자 등의 직무 발명을 장려하는 한편 지배주주 등을 대상에서 제외하여 **비과세 제도 남용* 방지**

* 실제 연구자가 아닌 지배주주 등에게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하여 소득세 부담 회피

[2] 기술혁신형 M&A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(상세본 27p)

① 현행 제도 개요

□ 내국법인이 **기술혁신형 중소기업***을 **합병**하거나 **주식을 인수**하는 경우 **기술가치금액****의 **10%를 세액공제**

*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합병등기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기업,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, 합병등기일 직전 사업연도의 연구·인력개발비가 매출액의 5% 이상인 중소기업 등

** **기술가치금액** = Max(ⓐ, ⓑ)
ⓐ : 특허권 등 평가액 합계
ⓑ : 양도가액 - {(피합병·인수법인의 순자산시가 × 130%}

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

□ **주식인수 기간요건 완화 및 세액공제 범위 확대**

❶ 현재는 **동일 사업연도 내 주식 인수*만 허용**하나, 다음 사업연도까지 **주식 인수도 허용**

* 피인수법인 지분의 50% 초과 또는
피인수법인의 지분 30% 초과 + 경영권 인수하는 경우

❷ **기술가치금액 범위**를 **조정**하여 **세액공제 범위 확대**(순자산시가 130% 초과분 → 120% 초과분)

⇨ **기술혁신형 중소기업**에 대한 **M&A 세제지원 확대**를 통해 **창업→성장→회수→재투자**로 이어지는 **벤처투자 선순환 촉진**

Ⅱ 민생경제 회복

1. 서민 · 중산층 부담 완화

[1]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

(상세본 29p)

① 제도개요

□ 무주택 또는 1주택을 소유한 근로자가 차입한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

○ (대상주택)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

○ (공제한도) 상환기간·방식 및 금리형태에 따라 연 300~1,800만원

② 개정 취지 및 개정 내용

□ (개정취지) 주택가격 상승,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부담 증가 등을 감안하여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

□ (개정내용) 대상 주택 가격 기준 상향 및 소득공제 한도 확대

○ (대상주택) 기준시가 5억원 이하 → 6억원 이하

○ (공제한도) 연 300~1,800만원 → 600~2,000만원

구분	상환기간 15년 이상			상환기간 10년 이상
	고정금리 & 비거치식	고정금리 or 비거치식	기타	고정금리 or 비거치식
현행	1,800만원	1,500만원	500만원	300만원
개정	**2,000만원**	**1,800만원**	**800만원**	**600만원**

[2] 전통시장 및 문화비 사용분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(상세본 31p)

①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개요

□ 근로자의 **신용카드·직불카드·선불카드, 현금영수증 등 사용분 소득공제**(적용기한: '25년말)

<table>
<tr><th>구 분</th><th colspan="4">내 용</th></tr>
<tr><td>공제대상</td><td colspan="4">총급여의 25% 초과 사용금액</td></tr>
<tr><td>공제율</td><td colspan="4">ㅇ 신용카드 : 15%
ㅇ 현금영수증·직불형카드 등 : 30%
ㅇ 도서·공연·박물관·미술관·영화관람료 사용분 : 30%
(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)
ㅇ 전통시장·대중교통 사용분 : 40%
('23.1.1~12.31 대중교통 사용분 : 80%)</td></tr>
<tr><td>공제한도</td><td colspan="4"><table>
<tr><th colspan="2">총급여
공제한도</th><th>7천만원 이하</th><th>7천만원 초과</th></tr>
<tr><td colspan="2">기본공제 한도</td><td>300</td><td>250</td></tr>
<tr><td rowspan="3">추가공제 한도</td><td>전통시장</td><td rowspan="3">300</td><td rowspan="2">200</td></tr>
<tr><td>대중교통</td></tr>
<tr><td>도서공연등</td><td>-</td></tr>
</table></td></tr>
</table>

② 개정 내용

□ **전통시장·문화비** 지출에 대한 공제율 **10%p 한시**('23.4.1.~'23.12.31.) **상향**

[3]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(상세본 32p)

① 기부금 세액공제 개요

□ 개인이 기부금단체에 기부 시 **세액공제**(개인사업자는 필요경비 산입)

○ **(공제율)** 1,000만원 이하 **15%**, 1,000만원 초과분 **30%**

○ **(공제한도)** 기부금 성격에 따라 소득금액의 100% 등으로 달리 적용

❶ 국가 · 지자체, 국방헌금 등 : 소득금액 × **100%**

❷ 그 외 기부금* : (소득금액 - ❶) × 30%(종교단체 10%)

* 사회복지단체, 의료법인, 학술·장학·문화예술·환경 단체, 종교단체 등

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

□ **(개정 내용)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**에 대해 '24.12.31.까지 **40% 공제율 적용**

<개정안에 따른 세액공제액 사례>

구 분	현행	개정안	차이
5천만원 기부	1,350만원*	1,550만원**	+200만원
1억원 기부	2,850만원	3,550만원	+700만원

* (1,000만원 × 15%) + ((5,000만원 – 1,000만원) × 30%)

** (1,000만원 × 15%) + ((3,000만원 – 1,000만원) × 30%) + ((5,000만원 – 3,000만원) × 40%)

□ **(개정 취지) 고액기부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**하여 **기부 장려**

[4] 반려동물 동물병원 진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(상세본 33p)

①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은?

□ 현재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 진료 시, **질병 '예방' 목적으로 행해지는 일부 진료 항목*을 제외**하고 **부가가치세**가 **부과**

* 예방접종, 중성화수술, 병리학적검사 등 농식품부장관이 기재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일부 진료항목

□ 이번 부가세 면제 조치는 반려동물 양육가구('22, 약 602만 가구)의 동물 진료비 부담* 완화를 위한 것으로 **기존 질병 '예방' 목적 외에 '치료' 목적을 추가하고, 면세 대상을 대폭 확대**

* 반려동물 1마리당 월평균 양육비 15만원 중 병원비가 6만원 ('22년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)

○ 특히, **다빈도 100개 진료항목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, 추후 단계적으로 범위를 확대할 계획**

② 100대 다빈도 질병에 실제 반려동물 진료항목의 대부분이 포함되는지?

□ 내과/피부과, 안과, 외과, 응급중환자의학과, 예방/영상진단의학과 등 **동물의료 분야별 진료 항목이 폭넓게 포함될 예정**

○ **동물병원 진료빈도 조사(농림부) 및 수의업계·학계·전문가 논의를 통해 주요 다빈도 진료 항목**을 도출하였으며, 이 중 100대 다빈도 진료 항목을 선정하여 면세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

□ 동물의료계 및 전문가들은 **100개 다빈도 진료항목이** 실제 동물의료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**진료의 80% 수준**을 **차지**한다고 평가

[5] 맥주·탁주 종량세 물가연동제 폐지 및 세율조정방식 개선

(상세본 35p)

① 개정 취지

□ **물가연동제**는 매년 **물가상승률**이 **주세율**에 **의무적**으로 **반영**될 수밖에 없어 **소폭의 세율 인상**이 대폭적인 **주류가격 인상**의 **원인**으로 작용

○ **소주** 등 **종가세 적용** 주류와 **과세형평**을 위해 '20년 도입된 이후 **맥주 1병**(500㎖) 당 **3~15원 수준 인상**

○ 소폭의 주세율 인상에도 불구하고, 제조~판매과정의 **마진**도 **가격에 반영**해 **소비자 부담**이 **대폭 증가**(500~1,000원 인상)

⇒ **주세율 조정**이 **주류가격 상승**의 **원인**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개선

② 현행 방식과의 차이점

□ 현행 물가연동제는 **매년 소비자물가 상승률**에 따라 **주세율**을 **의무·강제적**으로 **조정**

1) **세율** = 직전연도 세율 × (1 + **가격변동지수**[2])
2) **가격변동지수**: 직전 연도 **소비자물가상승률의 70~130%**의 범위에서 다른 주류와 과세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결정

□ 개정안은 **법률**로 **기본세율**을 규정하되, **필요시 시행령**으로 **기본세율**의 **±30% 내**에서 **탄력세율**로 **조정**

○ **물가**가 전반적으로 **인상**되는 상황이더라도 **주류가격**에 **변동**이 **없으면 세율도 그대로 유지** 가능

2. 소상공인 · 중소기업 지원

[1] 전통시장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한도 확대 (상세본 37p)

① 현행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한도 개요

□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한도는 ❶기본한도와 ❷수입금액별 추가 한도를 합하여 산정(소득세법 §35, 법인세법 §25)

		손금산입 한도 = ❶ + ❷
❶기본한도		일반기업 1,200만원 / 중소기업 3,600만원
❷수입금액별 (=매출액) 추가 한도	100억원 이하	수입금액 × 0.3%
	100~500억원	3천만원 + 100억원 초과 금액 × 0.2%
	500억원 초과	1.1억원 + 500억원 초과 금액 × 0.03%

□ 공연·전시회·문화재 관람 입장권 등에 사용된 **문화 기업업무추진비**의 경우 **손금산입 한도의 20%까지 추가 손금산입 허용**

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

□ 기업이 **전통시장에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**에 대해 **손금산입 한도(❶+❷)의 10%까지 추가 손금산입 허용**

○ (**인정 범위**) 「전통시장법」 상 **전통시장 구역 내 지출액**

○ (**사용처 제한**) **유흥업 등 소비성서비스업 지출액**은 제외

⇨ 기업의 **전통시장 내 지출**을 촉진하여 **내수활력 제고** 및 **소상공인 매출 확대** 지원

(2) 개인택시용 자동차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신설 (상세본 38p)

① 환급제도 신설 배경

□ 개인택시용 자동차를 면세 판매시 자동차 판매자 등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어, 차량 단종 또는 가격 인상으로 **개인택시사업자**에게 **부담**이 **전가**될 수 있다는 **의견**이 **제기**되어 왔음

※ (조세특례제한법 부대의견) 기획재정부는 개인택시 차량 면세로 인해 발생하는 매입세액불공제 문제 해결 방안을 2023년 정기회 전까지 국회에 보고할 것

○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부담이 가중될 경우 **택시요금 인상** 요인으로 작용, **소비자 부담 상승**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**우려** 제기

□ 이에 **자동차 판매자가 공급하는 택시**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면제제도를 종료하고 **과세 전환**하면서

○ **개인택시사업자**(간이과세자)의 부가가치세 경감 혜택을 유지하기 위하여 **사후환급제도 신설**

② 환급제도 개요

□ 간이과세자 개인택시 사업자는 택시차량 구매 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구매한 후 **부가가치세**를 사후에 **환급**

○ **환급대행** 등을 통해 **개인택시 사업자의 환급 절차 부담 완화** 예정(구체적 절차는 대통령령 등에 마련)

[3]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특례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

(상세본 40p)

① 제도 개요

□ **재창업자금 융자를 받은 중소기업인 등***에 대해 **최대 3년간** 체납에 따른 **압류·매각 유예, 납부고지 유예** 또는 **납부기한 연장**

* ①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융자받은 자, ② 신용보증기금·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융자받은 자, ③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받은 자,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성실경영실패자로 판정한 자

② 개정취지 및 개정내용

□ **(개정취지)** 불확실한 경기여건 등으로 **중소기업인**의 **경영상 어려움**이 **지속**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**세제지원 확대·연장**

○ **징수유예 확대**를 통해 **조세부담**을 **완화**해줌으로써 사업실패로 **일시적**으로 **세금 납부여력**이 **없는 중소기업인 재기 지원**

□ **(개정내용) 특례 대상**인 **재기중소기업인**에 '**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**으로부터 **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***을 **융자**받은 자'를 **추가**하고 **적용기한 3년 연장**

*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근거하여 금년 도입된 프로그램으로 현재 신청 접수 및 심사 진행 중(4월~)

Ⅲ 선제적 미래 대비

1. 결혼 · 출산 · 양육 지원

[1]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 (상세본 47p)

① 도입 배경

□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**공제한도**를 **'14년 5천만원**으로 정한 이후 **10년간 물가·소득상승, 전셋집 마련** 등 **결혼비용**의 **증가** 등을 **감안**하여 제도 마련

* 1) 소비자**물가**('14.1~'23.6.) : 93.7 → 111.1, **+18.6%**
2) 1인당 명목국민총소득(만원): ('14) 3,095 → ('22) 4,249 [**+37.3%**]
3) **주택**가격('14.1~'23.6.) : 83.5 → 95.6, **+14.5%**
4) **결혼비용**: 신혼집 2.8억원, 혼수 0.2억원 등 **3.3억원**('23년, ㅇㅇ결혼정보업체)
5) **주택매매/전세가격**(억원, '23.6월, 한국부동산원): (전국) 3.8/2.2 (수도권) 5.5/3.0

□ 또한, **우리나라 증여세 부담**이 **OECD최고수준**인 점, **부모입장**에서 **자녀**의 **결혼비용**을 **지원**하는 현실, **해외사례** 등도 고려해 결정

< OECD 국가 증여세 최고세율 >

구 분	순위	국 가	최고세율(%)
증여세 운영 (24개국) ☞ 평균 26%	1	일 본	55
	2	**한 국**	**50**
	2	스 위 스	50
	4	아이슬란드	46.2
	5	프 랑 스	45
	6	미 국	40
	7	스 페 인	34
	8	아 일 랜 드	33
	9	터 키	30
	9	독 일	30
	11~24	벨기에, 칠레, 영국, 네덜란드, 헝가리, 핀란드, 덴마크, 룩셈부르크, 슬로베니아, 리투아니아, 그리스, 포르투갈, 폴란드, 이탈리아: 4~27%	
증여세 미운영 (14개국)	캐나다, 호주, 뉴질랜드, 스웨덴, 라트비아, 콜롬비아, 코스타리카, 이스라엘, 슬로바키아, 멕시코, 오스트리아, 노르웨이, 체코, 에스토니아		

* 1) 증여세 운영하는 OECD 24개국 중 **우리나라의 자녀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한도**는 벨기에·헝가리·룩셈부르크·핀란드에 이어 **하위 5번째**
2) **일본**은 **결혼자금** 용도로 **직계존속**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 **천만엔(약 1억원) 공제**

② 혼인 증여재산 공제 적용 시 줄어드는 세부담은?

※ (전제) 증여 전 10년 간 공제받은 금액 없고, 신고세액 공제(3%) 미적용

□ **부모**가 **자녀**에게 **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1억 5천만원 증여**하는 경우

- ㅇ **(현행)** 5천만원 공제 후 1억원(세율 10%)에 대한 **증여세 1천만원 부담**
- ㅇ **(개정)** 5천만원 공제 + 혼인공제 1억원 적용되어 **증여세 없음**

③ 재산용도 제한을 하지 않은 이유

□ **납세자 불편을 최소화**하기 위해 요건 간소화

- ㅇ **결혼자금의 유형, 결혼비용의 사용 용태**가 **다양**하고 **복잡**하므로 **용도**를 일일이 **규정**할 경우 **현실의 다양한 사례 포섭 불가능**
- ㅇ 재산용도 제한 시 신혼부부가 **증빙자료 보관·제출** 및 **과세관청에 신고**해야 하므로 **납세협력비용 과도**

□ 재산용도를 제한하더라도 **해당 용도**로 **사용한 자금**의 **원천**이 **증여재산인지** 타 재산인지 **확인**하는 것도 **현실적으로 곤란***

* 예) 증여재산이 현금인 경우 해당 재산이 용도에 맞게 쓰였는지 확인 곤란
예) 결혼자금을 은행에서 대출받은 신혼부부가 증여받은 현금으로 대출상환하는 경우 결혼용도에 해당하는지 확인 곤란

□ 재산용도를 제한하는 대신에 ❶**공제한도 설정**, ❷**공제기간**을 **혼인 전 2년 + 후 2년(총 4년)**으로 **한정**, ❸**증여재산 범위**도 **제한***

* 고저가 양수도, 주식상장이익 등 혼인증여공제 취지와 맞지 않는 증여추정·증여의제 등은 공제적용 배제

④ 공제기간을 혼인 전 2년, 후 2년 이내로 설정한 이유

□ 혼인 증여재산 공제는 **제도 취지**상 **일반 증여재산 공제**와 같이 **공제기간**을 **장기간**(10년) **설정**하는 것은 **부적절**

□ 청약, 대출 등으로 **혼인신고일**과 **실제 결혼 시점이 상이**한 경우 많아 **공제기간**을 **짧게 설정**하는 것은 **현실과 맞지 않음**

⇒ **결혼 전후**로 **공제기간**을 **한정**하여, **4년(결혼 전 2년 이내, 후 2년 이내)**으로 **설정**

[2]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(상세본 49p)

① 자녀장려금(CTC) 개요

□ (도입목적) 저소득가구의 **자녀양육 부담 경감**('14년 도입)

□ (지원대상) **근로·사업·종교인소득**이 있는 가구

□ (산정방식) **맞벌이 여부**에 따라 **가구유형을 2가지로 분류**하고, **소득과 자녀수**에 따른 **CTC 지급액 산정**

❶ 소득요건 (만원)

부부합산 총급여액 등	4,000 미만

❷ 재산요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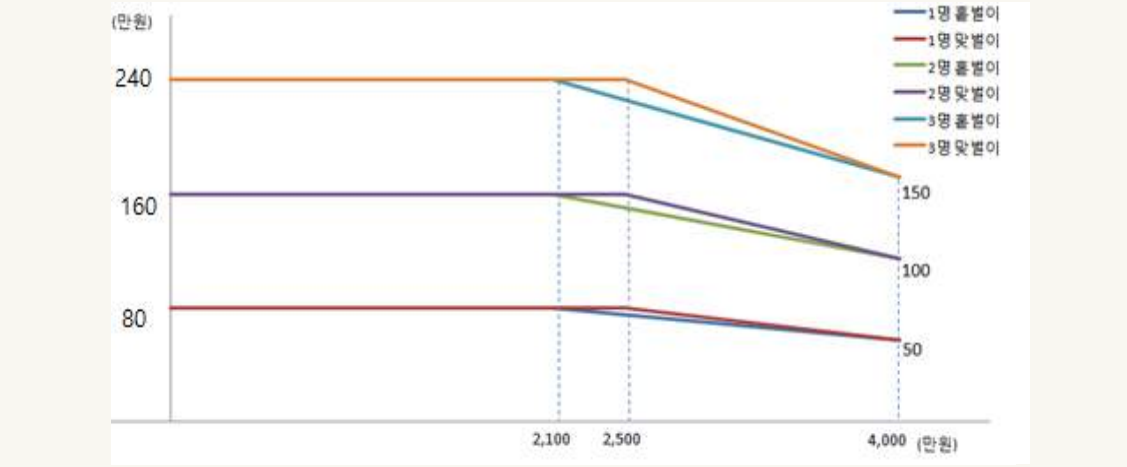
가구원 재산합계액	2.4억원 미만

※ 1.7억원 이상 50%감액

❸ 최대지급액 (만원)

자녀 1명 당	80

※ 소득수준에 따라 50~80만원



○ (지급시기) **다음 해 9월 지급**

○ (지급실적) **58만 가구, 0.5조원**('22년 지급)

② 자녀장려금 확대 배경 및 내용

□ **자녀 양육가구**에 대한 **두터운 지원**을 위해 **자녀장려금 대상자**와 **지원수준**을 **확대**

○ (**소득요건**) 급여 인상 등 **소득수준 상승** 등을 감안하여 **소득 상한금액**을 **현행 4,000만원**에서 **7,000만원**으로 **상향**

○ (**최대지급액**) **자녀 양육비 부담**을 덜어주기 위하여 **자녀 1인당 최대지급액**을 **현행 80만원**에서 **100만원**으로 **인상**

③ 자녀장려금 대상인원 확대 및 지급금액 증가 효과

□ (**수혜가구**) 현행 58만 가구에서 약 **104만 가구로 확대**(+46만 가구)

□ (**지급금액**) 현행 0.5조원에서 **1조원으로 증가**(+0.5조원)

[3-1] 출산 ·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(상세본 50p)

① 개정이유 및 효과

□ **(개정이유)** 출산·보육수당 비과세 한도(현행 10만원)가 **'03년 이후 유지**되어 온 점, **저출생 현상** 등을 고려하여 **비과세 한도 상향**

□ **(개정효과) 출산·보육수당을 지급받는지 여부** 및 **지급액 수준, 개인별 급여 수준**에 따라 **세부담 경감효과에 차이**가 있음

* (사례) 총급여 5천만원인 근로자가 출산·보육수당 매월 20만원 지급받는 경우 세부담 감소 효과 : △18만원 수준 (비과세소득 증가액 120만원 × 세율(15%)) - (현행) 월 10만원 × 12월 = 120만원 비과세 → (개정안) 240만원 비과세

[3-2] 근로자 출산 · 양육 지원금액 손금 · 필요경비 인정 근거 마련

(상세본 50p)

① 제도 개요

□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**출산축하금** 등을 **사회통념상 인정**되는 범위 내에서 **손금 및 필요경비 인정**

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

□ **근로자**에게 **출산 · 양육 지원금**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을 **손비 및 필요경비 범위**에 **명시적으로 추가**

○ 단, **근로자**에게 **공통**적으로 **적용**되는 **지급기준 필요**

⇨ **근로자**에게 지급하는 **출산 · 양육 지원금**의 **손금·필요경비 인정 근거**를 마련하여 **가족친화적 문화 조성** 지원

[4]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(상세본 51p)

① 제도개요

□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총급여의 3%를 초과하여 사용한 **의료비 지출액**에 대해 **15% 세액공제**

구 분	내 용
공제대상	총급여의 3% 초과 사용금액
공제대상 비용	ㅇ 진찰·치료·질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ㅇ 치료·요양을 위한 의약품(한약포함) 구입 비용 ㅇ 장애인보장구 및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·임차 비용 ㅇ 시력보정용 안경·콘택트렌즈 구입 비용(1인당 50만원 한도) ㅇ 보청기 구입 비용 ㅇ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실제 지출한 본인 일부 부담금 ㅇ **산후조리원 비용**(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, 1회 200만원 한도)
공제한도	ㅇ 근로자 본인·장애인·65세 이상자·난임시술비 : 한도 없음 ㅇ 그 외 부양가족 : 연 700만원

② 개정내용 및 이유

□ **산후조리원 이용 비용**은 **소득수준에 관계없이** 출산에 수반되는 **필수적인 비용**임을 감안해서 **모든 근로자**를 대상으로 지원

□ **보육·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6세 이하자**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 **한도를 폐지**

2. 청년 자산형성 및 노후대비

[1] 저축지원 금융상품 가입대상 확대 (상세본 52p)

① 개정 취지

□ (현행) **청년도약계좌, 청년형 장기펀드 등** 소득요건이 있는 저축지원 금융상품의 경우 **소득이 없거나 비과세 대상 소득**만 있는 경우는 **가입할 수 없음**

ㅇ **육아휴직자**의 경우 「소득세법」상 **육아휴직급여가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**됨에 따라 **상품 가입이 불가**

□ (**개정이유**) 근로관계 법령 상 **육아휴직자**의 경우에도 **근로자 신분이 유지**되는 점을 고려하여 **저축지원 금융상품에 가입**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

[2] 저축지원 금융상품 가입시 소득요건 기준연도 개선

(상세본 53p)

① 개정 취지

□ (현행) **청년도약계좌*** **등** 소득요건이 있는 저축지원 금융상품 가입시 **직전연도 소득**(국세청 소득확인증명서)을 기준으로 **소득 판단**

* 소득기준: 총급여액 7,500만원, 종합소득금액 6,300만원 이하

○ 다만, **매년 1~7월 중 가입*** 시에는 직전연도 소득확인 증명이 없어 **전전연도 소득을 기준**으로 우선 가입하고, **추후 직전연도 소득**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**비과세 혜택을 배제**

* 통상 직전연도 소득확인증명서 발급은 7월 초부터 가능

□ (개정이유) **1~7월 중 가입**하는 경우로서 **직전연도 소득확인 증명이 없는 경우**에는 **전전연도 소득 기준도 인정**함으로써 **가입 이후 비과세 혜택이 배제**되는 사례 **방지**

② 적용시기

□ **청년도약계좌, 청년희망적금 기존 가입자**의 경우에도 **개정 규정**에 따라서 **세제혜택 적용**

[3]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전환가입 허용 (상세본 54p)

① 개정 취지

□ (현행) **청년형 장기펀드***의 **최소 가입기간은 3년**으로, 가입 후 **3년 이내 해지** 시 소득공제에 따른 **감면세액 상당액 추징**

* 연 600만원 한도로 납입금액의 40% 소득공제

○ **가입한 펀드에 수익률이 낮은 경우**에도 가입 후 **3년 이내**에 **가입 상품 변경 불가**

□ (개정이유) **청년형 장기펀드 간 전환·이체**는 해지로 보지 않고 **추징하지 않음**으로써 **청년층의 투자**를 지원하려는 것임

[4] 노후 연금소득에 대한 세부담 완화 (상세본 56p)

① 제도개요 및 개정내용

□ **(납입) 연금계좌**(연금저축 + 퇴직연금계좌(IRP) 등) **납입액**에 대해 **일정 금액**을 **한도**로 **12%, 15%**(총급여 5,500만원 이하) **세액공제**

총급여액 (종합소득금액)	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(연금저축 납입한도)	세액 공제율
5,500만원 이하 (**4,500만원**)	**900만원** **(600만원)**	15%
5,500만원 초과 (**4,500만원**)		12%

□ **(운용) 운용수익**에 대해 **비과세**

□ **(수령) 연 1,200만원 이하** 연금소득에 대해 **저율**(3~5%) **분리과세**

⇒ **(개정) 분리과세 기준금액**을 **상향**

< 현 행 >

사적연금소득 합계액	과세방법
1,200만원 이하	분리과세(3~5%)
1,200만원 초과	분리과세(15%)

* 종합과세 선택 가능

⇒

< 개정안 >

사적연금소득 합계액	과세방법
1,500만원 이하	분리과세(3~5%)
1,500만원 초과	분리과세(15%)

* 종합과세 선택 가능

② 세부담 완화 배경

□ 분리과세 기준금액이 **'13년 이후 유지**되어 온 점, 그간 **물가상승 및 노후생활비 증가** 등을 고려하여 **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**

Ⅳ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

1. 납세자 권익 보호

[1] 조세불복 관련 소액사건 범위 확대 (상세본 59p)

① 제도 개요

□ 조세불복 시 **소액사건** 등 **경미한 사항***은 **국세심사위원회**를 **생략**하거나 **주심조세심판관 단독처리** 가능

* 소액청구 중 ①**사실판단 사항**이거나 ②**유사 결정례**가 있는 경우

○ 조세불복은 국세심사위원회(이의신청·심사청구) 또는 조세심판관 회의(조세심판)를 거쳐야 하나,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예외 허용

② 개정 취지 및 개정 내용

□ **(개정 취지) 납세자**의 **신속한 권리구제**를 위해 **소액사건 범위 확대**

○ **현행 3천만원 기준**은 **90년대에 규정*** → 경제규모 성장 등을 감안하여 **기준 조정 필요**

*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: '98년 / 조세심판: '96년

□ **(개정 내용)** 이의신청·심사청구·조세심판 신청 또는 청구 시 **소액사건 범위**를 **확대** (3천만원 미만 → 5천만원 미만)

[2] 수정신고시 관세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확대 (상세본 p62)

① 제도 개요

□ **보정기간**(신고납부일로부터 6개월) **경과 후부터 1년 6개월 이내 수정신고** 시, 부족세액에 부과하는 **과소신고가산세**의 **일부***를 **감면**

* (보정기간 경과 후 6개월 이내) 20%
(보정기간 경과 후 6개월 초과 1년 6개월 이내) 10%

② 개정 취지 및 개정 내용

□ **(개정취지) 납세자의 조기 수정신고**를 **유도**하고, **「국세기본법」과의 정합성**을 **제고**할 필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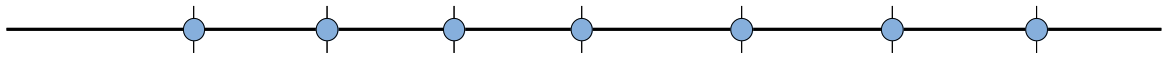
○ **「국세기본법」**은 **'19.12월 개정**을 통해 **가산세 감면율**이 **상향*** 되었으나, **「관세법」**은 **국세기본법 개정 이전과 동일한 수준**

* (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): 20% → 30%
(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): 10% → 20%
(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): 10% → 현행유지

○ **내국세와의 정합성**을 **고려**하여 관세에 대해서도 **일정 기간 내 수정신고**하는 경우 적용되는 **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**을 **상향 조정**

□ **(개정내용) 「관세법」** 상 **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**을 **상향 조정**

<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 현행 및 개정안>



현 행	100%	**20%**	**10%**		0%
개 정 안	(동 일)	**30%**	**20%**	**10%**	0%

[3] 수출입물품 검사 수수료 폐지 (상세본 64p)

① 제도 개요 및 수수료 폐지 이유

□ (**제도 개요**) **세관공무원**이 세관검사장이 아닌 장소에서 **물품을 검사**하는 경우 **수출입신고인에게 검사에 따른 수수료 부과**

* 계산 방법 : 기본수수료(소요시간×2천원) + 교통비·실비 등
(최근 5년간 연간 수수료 규모 : 평균 약 2,500만원)

□ (**폐지 이유**) 수출입물품 검사가 개인의 신청이 아닌 **국가의 필요에 의해 시행**되는 점을 감안 → **수출입기업 부담** 완화

[4] 부동산 양도소득세 알기 쉽게 새로 쓰기 (상세본 65p)

① 개정이유

□1 **개관규정** 및 **개괄규정 부재**로 **양도세 큰 틀 이해 어려움**

○ **부동산 양도세**는 **일반 국민**(1세대 1주택자 등)**에게 적용**되고 **계산 구조가 복잡**함에도 양도세 **전체 구조를 설명**하는 **개관규정 부재**

○ **각종 특례**(1세대 1주택 비과세, 다주택자 중과 제외 등)의 경우 **여러 세부 유형**이 존재함에도 **개괄규정** 및 **세부 유형 제목 없이 병렬적 서술***

* 같은 조(條)에서 여러 세부 유형을 각 항(項)별로 서술하고 있으나, 조(條)와 달리 항(項)은 제목이 없어 특례 내용 쉽게 파악 곤란

□2 **잦은 법령개정이 누적**되어 **양도세제** 지나치게 **복잡·난해**

○ 부동산가격 **과열시 과세 강화, 침체시 세제지원 확대**를 위한 **법령 개정이 누적**되어 **양도세제 복잡** 및 조문 내 **논리적 연관 부족***

* (예)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(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) 중 보유·거주기간 관련 사항이 여러 항(②,⑤,⑥,⑧,⑫)에 분산되어 서술

□3 **서술식 장문**(長文)**, 상이한 내용 동시 기술** 등으로 **가독성 저하**

○ 복잡한 과세요건 등을 **단순 나열식으로 기술**하여 **문장 길이가 길고** 한 조(條)에 딸린 **항**(項)**이 많아 의미 파악** 및 **이해 곤란**

○ **같은 조·항**에서 **유사성이 적은 내용** 동시 기술, **예외의 예외 표현** 사용 등으로 인해 법령 수요자인 일반 국민 **혼란 유발**

② 개정내용

1 양도세 **큰 틀 이해 제고** 위해 **개관규정** 및 **개괄규정 신설**

○ 일반 국민이 양도세에 대해 **최소한 개략적 이해**를 할 수 있도록 **양도세 계산구조** 및 **관련 조문**을 설명하는 **개관규정 신설**

○ 한 제도 내에 **여러 세부 유형 존재**(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등)시, **세부 유형 제목** 및 **핵심 내용**을 설명하는 **개괄규정 신설**

2 일반 국민이 **이해하기 쉽도록** 복잡·난해한 규정 **조문 재구조화**

○ **관련 사항**은 **같은 항**에서 규정하는 등 **논리적 체계**에 따라 **조문 재배열***

* (예)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: ①비과세 대상 주택 요건, ②비과세 대상 부수토지 범위, ③겸용주택 비과세 범위, ④기타 順으로 규정

○ **동일 내용**이 **자주 반복**되는 경우에는 **정의규정 신설 후 인용**

3 **가독성 제고** 위해 **단문 사용** 및 **도표·계산식 활용**

○ 지나치게 긴 문장은 **짧은 단문**을 **사용**하여 **분리 기술**

○ **예외의 예외 규정**은 예외 규정과 분리하여 **별도 기술***

* 하나의 항에 예외 규정과 그 예외에 대한 예외 규정을 동시 규정시, 단문 형식이더라도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점 감안

○ 도표·계산식 활용시 이해가 쉬운 경우에는 **도표·계산식으로 대체**

2. 조세회피 관리 강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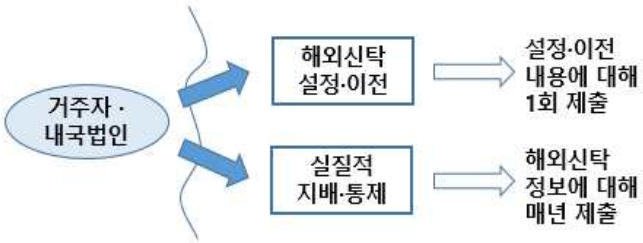
[1] 해외신탁 자료 제출의무 부여 (상세본 71p)

① 제도 개요

□ **거주자·내국법인이 해외신탁을 설정** 또는 **해외신탁에 재산을 이전**하거나 **해외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·통제**하는 경우,

○ 신탁계약정보, 재산가액 등의 내용을 포함한 **해외신탁명세**를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**6개월 이내 제출**

□ **불이행시 신탁재산가액의 10% 이하(최대 1억원)의 과태료 부과**



[실질적 지배·통제하는 경우]

❶ 위탁자가 신탁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보유

❷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리 보유

❸ 신탁 종료 후 잔여재산을 귀속 받을 권리 보유 등

② 신탁재산가액의 평가방법

□ **신탁재산가액**은 **신탁 설정·이전일** 또는 **과세연도 종료일**의 **시가**(時價)에 따르며, 시가 산정 및 평가가 곤란한 경우 **취득가액**

○ 신탁재산가액 평가와 관련하여 **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** 제61조~제65조 평가 규정을 준용하며,

○ 재산의 종류,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**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**에 따른 평가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**취득가액***으로 함

* 현행 해외부동산등 자료제출의 경우 취득·처분가액을 기준으로 취득·보유현황 등 신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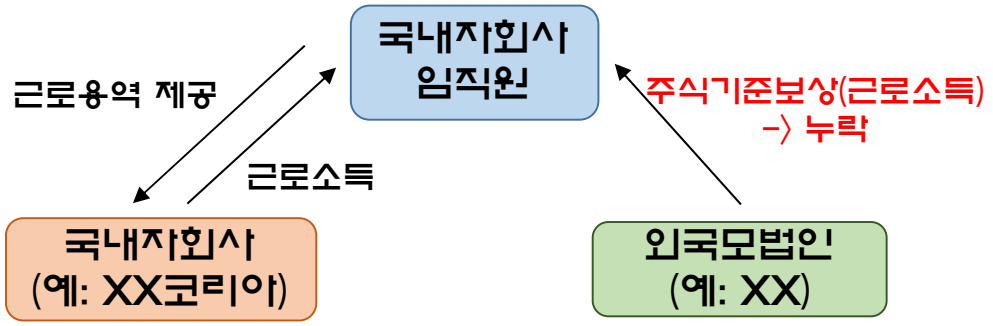
[2] 임직원 국외 주식기준보상 거래내역 등 제출의무 부여

(상세본 72p)

① 도입 이유

□ 국내자회사 또는 지점에 근무하는 **임직원**이 **외국모법인**으로부터 **근로의 대가**로 **주식기준보상***을 받아 **근로소득이 발생**하였음에도 **종합소득 신고를 하지 않는** 등 **조세회피**가 **발생**

*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, 주식 또는 주식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으로 지급받는 것 등



□ 국내자회사 또는 지점에 임직원의 **주식기준보상 거래내역**에 대한 **제출의무**를 **부여**하여 **조세회피 방지** 및 **성실신고 기반** 마련

② 제도 개요

□ 국내자회사 또는 지점에 **임직원 주식기준보상 거래내역**에 대한 **제출의무**를 **부여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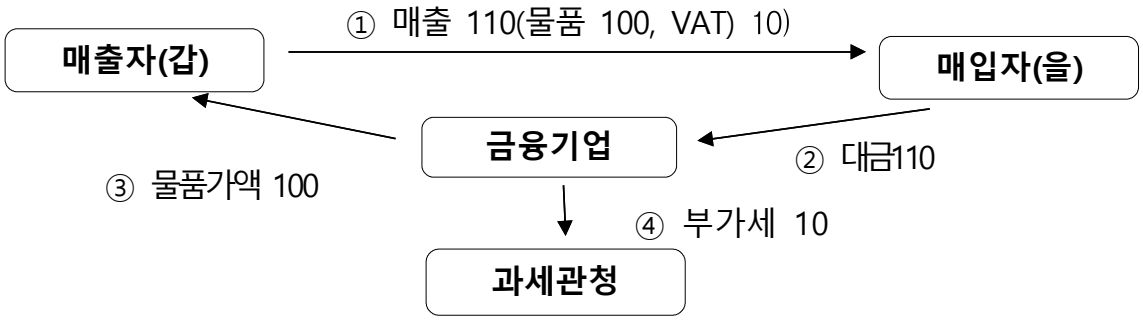
구 분	주요 내용
제출대상자	■ **임직원***의 **사용자**인 **내국법인** 또는 **외국법인 국내사업장** * 임직원이었던 자 포함
제출요건	■ **임직원**이 **국외지배주주***로부터 부여받은 **주식기준보상등****을 **행사/지급**받는 **경우** * 내국법인 임직원: 내국법인 주식 50% 이상 직간접 소유한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임직원: 외국법인 본점·지점, 외국법인 주식 50% 이상 직간접 소유한 다른 외국법인 ** 주식매수선택권, 주식/주식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으로 지급받는 상여금
제출자료	■ **주식기준보상등 거래내역** * 주식기준보상등 부여, 행사·지급내역 및 이익, 관련 임직원 인적사항 등
제출시기	■ **주식기준보상등 행사/지급받은 날이 속한 과세기간**의 **다음연도 3.10일**

[3] 매입자 납부특례 적용대상 확대 (상세본 73p)

① 매입자납부특례 제도 내용

□ **(개요) 매입자**가 물품 구매시 **대금을 금융기관의 전용거래계좌*에 입금**하면 **금융기관이 부가가치세를 과세관청에 납부**

* 국민, 농협, 대구, 신한, 우리, 기업, 하나은행 등 7개 금융기관 지정



※ 을이 대금 110(물품가액 100, 부가세 10)을 금융기관에 송금하면 금융기관은 물품가액 100은 갑에게 지급, 부가세 10은 국세청에 납부

□ **(대상물품) 금지금**('08.7월), **고금**('09.7월), **구리스크랩**('14.1월), **금스크랩**('15.7월), **철스크랩**('16.10월)

② 매입자납부특례 적용대상 확대 배경

□ 매입자납부특례 대상을 비철금속류(알루미늄·납·아연·주석·니켈 등)로 확대하여 **부가가치세 탈루 방지** 및 **제도의 실효성 제고**

[4] 우회덤핑 방지제도 도입 (상세본 73p)

① '우회덤핑'의 의미

□ 우회덤핑이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**물품의 특성, 생산지 또는 선적지를 변경**하는 등 방법으로 **해당 조치**를 **우회**하여 그 **적용을 회피**하는 것을 의미함

○ 전 세계적 **보호무역주의 강화** 추세에 따른 국내산업 보호의 필요성도 커지며, **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수도 증가*** 중으로 **우회덤핑**의 **우려**도 함께 높아지고 있음

* '23.7월 현재 기준 20개 품목, 24건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 중

② 우회덤핑 방지제도 도입 배경

□ **현행 관세법령**은 우회덤핑에 대응하는 **별도 절차**가 **없어**, 국내 산업 피해에 **적시 대응**이 **어려움**

○ 우회덤핑 물품은 기존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물품과 큰 차이가 없음에도 **현행 신규 물품과 마찬가지로 원심조사**로 진행함에 따라 조치까지 **장기간* 소요**

* 우회덤핑 조사는 일반적으로 완화된 덤핑률 산정과 산업피해 판정이 요구되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나, **신규 원심조사**는 **통상적으로 12개월 소요**

[5] 관세포탈 등 명단공개 대상 확대 (상세본 74p)

① 제도 개요

□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등이 2억원 이상인 **고액 · 상습체납자**의 **인적사항 · 체납액 등**을 **공개 중**

② 개정 취지 및 개정 내용

□ **(개정취지)**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위해 **고액의 관세**를 **포탈하는 자**의 **명단도 공개**할 필요

○ 최근 수입물품 가격 저가신고 등 **관세포탈 사례** 및 **관세포탈 금액**이 **증가**하는 추세*

* 관세포탈범 적발 금액 및 건당 금액(억원): ('21) 2,046/29.7, ('22) 3,228/64.6

○ **「국세기본법」**은 **고액**(포탈세액 등이 연간 2억원) **조세포탈범**의 **인적사항 · 포탈세액 등**도 **공개**

○ 현행 **「관세법」**에 의하면 **관세포탈액이 크지만 체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*** 위법성 정도가 높더라도 **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**

* (현행) 1년 경과 체납액 합계가 2억원 이상인 고액·상습체납자만 공개

□ **(개정내용) 관세포탈죄 등**으로 **유죄판결**이 **확정**된 자로서 **포탈 관세 등**이 **연간 2억원 이상인 자**를 **명단공개 대상에 추가**

③ 납세자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

□ **관세포탈범**은 현재 명단공개 대상인 고액 · 상습 체납자보다 **불법행위의 정도가 높아** 과도한 처분이라 보기 어려움

[6] 세법상 주택 개념 정비 (상세본 75p)

① 개정취지 및 개정내용

□ (**주택 개념 구체화**) 소득세법은 **주택**을 **'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'**이라고만 규정하여, **주택 여부**에 대한 **납세자 예측가능성 저해**

○ 「주택법」상 정의 규정을 활용하여, **주택의 시설구조상 특성***을 **소득세법상 주택 정의에 반영·구체화**

* 출입문, 취사시설, 욕실이 각 세대별로 별도 설치되는 등 세대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물

□ (**보유기간 특례**) 건축물을 **장기간 상업용 등으로 사용**한 후 1세대 1주택 비과세·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위해 **양도 직전 주택으로 용도변경**하는 사례 **다수 발생 → 조세회피 방지 필요**

○ (**비과세**) **1세대 1주택 비과세*** 적용 시 **보유기간**을 주택으로의 **용도변경일부터 기산**

* 비과세 요건 : ❶양도일 기준 1세대 1주택자 + ❷2년 이상 보유 + ❸(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경우) 2년 이상 거주

○ (**장기보유특별공제**) **1세대 1주택**인 경우, **❶, ❷ 중 큰 금액** 적용

❶ **전체 보유기간(취득일~양도일)**에 대해 **일반 공제율(최대 30%)** 적용한 금액

❷ **'용도변경일~양도일'**을 보유기간으로 보아 **1세대 1주택 공제율(최대 80%)** 적용한 금액

② 주택 개념 구체화로 세부담에 변화가 있는지?

□ 「**주택법**」 **규정, 과세관청 집행 실태** 등을 **반영**한 개정으로 **주택 여부 판정** 및 **양도소득세 등 세부담**에는 **변화 없음**

○ **세법상 주택 여부**에 대한 **판단기준을 구체화**함으로써 **납세자·과세관청간 혼선**을 **줄일 수 있을 것**으로 기대

③ 적용시기

□ (**주택 개념 구체화**) **'24.1.1일 이후 양도분**부터 적용

□ (**보유기간 특례**) 납세자 예측가능성 등 감안, **1년 유예기간**을 두어 **'25.1.1일 이후 양도분**부터 적용

[7] 원산지인증수출자 자격신청 시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보완

(상세본 77p)

① 제도보완 취지

□ **수출자의 원산지증명 편의**를 위해 도입된 **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**가 보다 **신뢰성 있게 운영**될 수 있게 하기 위해 제도 보완

○ **원산지인증수출자**란 관세당국으로부터 **원산지증명능력이 있다고 인증받은 수출자**로서, ❶FTA협정이 정한 범위에서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이 가능하고, ❷국내법령에 따라 **원산지증명에 관해 간소한 절차**를 적용받을 수 있음(FTA특례법 제12조)

- FTA협정관세 적용 과정에서 수출자가 어려움을 겪는 **원산지증명절차를 간소화**하고 **비용을 절감**하기 위해 도입

○ 제도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**인증수출자 자격 신청 과정**에서 제출서류 조작 등 **부정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**가 있으므로,

- 「FTA특례법」에 **인증수출자 인증 신청 시의 부정한 행위**에 대한 **제재 규정을 신설**해 **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**하려는 것임

3. 과세형평 제고 및 기반 강화

(1)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확대 (상세본 78p)

① 현금영수증 발급 시 혜택은?

□ **(발급 사업자에 대한 혜택)** 현금영수증 **발급 세액공제 적용**

○ **부가가치세** 신고 시 **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의 1.3% 공제**

□ **(수취 근로자에 대한 혜택)** 신용카드·현금영수증 등 **소득공제 적용**

○ 현금영수증, 신용카드, 직불카드 등의 **연간 사용금액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%를 초과**하는 경우 **소득공제**

②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경우는?

□ **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**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**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**인 재화·용역을 공급하고 **대금을 현금**으로 받은 경우

○ **(미발급 가산세) 미발급금액의 20%**

□ **현금영수증 가맹점**이 의무발행업종이 아닌 경우에도 **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**한 경우

○ **(미발급 가산세*)** 소비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**발급을 거부**하거나 **사실과 다르게 발급**한 경우 **미발급 금액의 5%**

* 건당 거래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는 가산세 제외

[2] 플랫폼 종사자의 소득파악 기반 공고화 (상세본 79p)

①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소액부징수 개요

□ 징수하는 세액보다 징세비용이 과도한 경우 등을 고려해 **징수세액이 소액인 경우** 해당 세액을 **징수하지 않는 제도**

○ 사업소득에 대한 **원천징수세액**(세율 3%, 지방소득세 제외)의 경우 **1,000원 미만**인 경우 징수하지 않음

○ 다만, 원천징수만 배제될 뿐 해당 소득에 대해 **종합소득세 신고·납부의무**는 있어 **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은 아님**

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

□ (**개정내용**)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중 **계속적·반복적**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는 **인적용역 소득**에는 **소액부징수의 적용 예외** 인정

□ (**개정취지**) 음식배달용역 등 인적용역의 경우 건별로 소득을 지급하는지 또는 주/월별로 지급하는지에 따라서 **원천징수 적용 여부***가 **달라**질 수 있어 **원천징수 적용기준**을 **명확히 함**

* 건당 소득에 원천징수시 원천징수세액이 1,000원 미만으로 원천징수 배제될 수 있으나, 주·월단위로 소득 지급시 원천징수세액 1,000원 초과하여 원천징수대상에 해당

□ (**세부담 영향**) 다음해 5월 **종합소득세 신고시**에 납부할 세액과 원천징수세액간 차이가 있는 경우 **차액은 환급**되므로 **실제 세부담에는 영향 없음**

※ 종합소득세 신고시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국세청은 납부·환급세액 등을 안내, 간편하게 납부·환급할 수 있는 모두채움 서비스 제공 중

[3]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범위 합리화 (상세본 80p)

① 제도 개요

□ **(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) 자회사등**으로부터 받는 **배당금**은 **이중과세 해소**를 위해 **지분율**에 따라 **일정비율을 익금**에 **산입하지 않음**

< 지분비율에 따륜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률 >

피출자법인 지분비율	20% 미만	20%이상~50% 미만	50% 이상
익금불산입률	30%	80%	100%

□ **(익금불산입 배제) 단기 보유주식 배당** 또는 법인 단계에서 **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소득**은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**제외**

- 배당기준일 전 3개월 내 취득주식 배당금(포트폴리오 투자)
- 배당금 소득공제(법인단계 이중과세 조정)로 법인에서 과세하지 않은 소득
- 100% 감면 법인 배당금(수도권 밖 본사이전, 조특법상 조세감면)

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

□ 법인단계에서 **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소득** 및 **이중과세 조정이 필요없는** 경우 **익금불산입 배제** 대상에 **추가**

○ **법인세**가 **과세되지 않은 재평가 적립금 감액 배당**

○ **유상감자**시 **취득가액**을 **초과**하는 **금전** 및 그 밖의 **재산가액** 등

⇨ **이중과세 조정제도**를 이용한 **조세회피 방지**

Ⅴ 기타

[1] 연결납세방식 조기 포기 허용 예외사유 신설 (상세본 89p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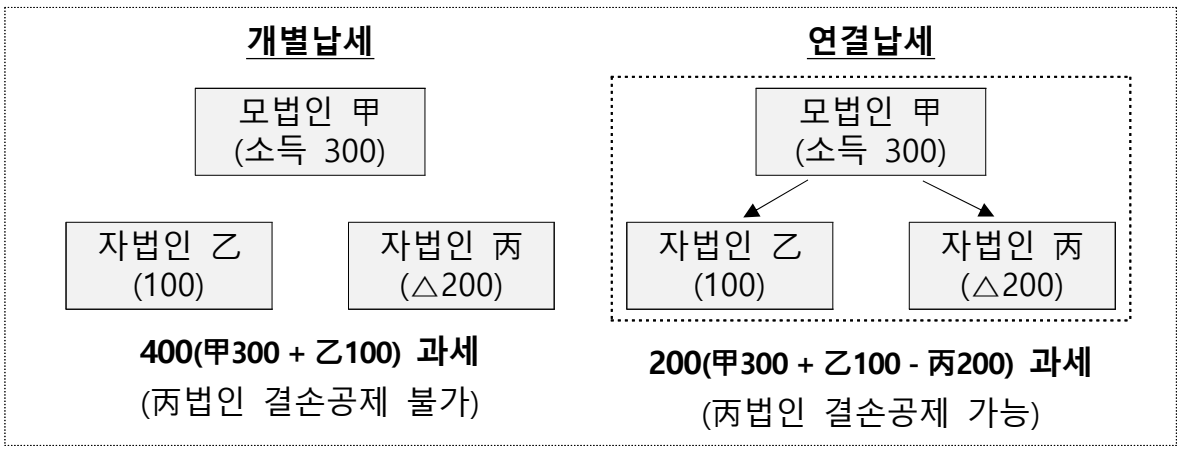
① 연결납세 제도 개요

□ **모·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대상**으로 하여 각 **법인의 소득과 결손금을 합산**하여 **법인세를 납부**하는 제도

* '10년 사업연도부터 시행

○ **(제도취지)** 기업구조 선택에 대한 조세중립성 확보

○ **(연결대상)** 연결모회사가 출자지분의 90% 이상 보유하는 자회사



② 연결납세방식의 포기

□ **(현행 제도) 연결납세 신청 후 5년간 연결납세방식 의무 적용**

○ **연결납세방식**의 **적용**을 **포기**하려는 경우 연결납세를 적용하지 않으려는 **사업연도 개시일 전 3개월**이 되는 날까지 신고

□ **(개정안)** 연결범위 확대*에 따라 연결집단에 연결자법인이 추가된 경우 **5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연결납세방식 포기 허용**

* '24년부터 연결범위가 100% 보유 자회사에서 90% 보유 자회사로 확대

⇨ **연결납세방식 적용**에 대한 **납세자 선택권 부여**

[2]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필요경비 합리화 (상세본 110p)

① 제도 개요

□ **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**으로부터 **증여받은 자산***을 증여일로부터 **10년 내 양도**하는 경우, **증여자의 취득 당시 취득가액을 적용**하여 **양도소득세를 과세****하는 제도

* 토지, 건물,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
**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

② 제도 효과

□ **이월과세 적용**으로 **증여자의 취득 시점부터 누적된 자본이득을 온전히 과세**함으로써 **공평과세 실현**

○ **이월과세 미적용** 시 '**증여재산 공제***' + 증여 당시 증여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함에 따른 **양도차익 감소**' → **조세회피 가능**

* 공제한도 : (배우자) 6억원 (직계존비속) 5천만원(미성년자 2천만원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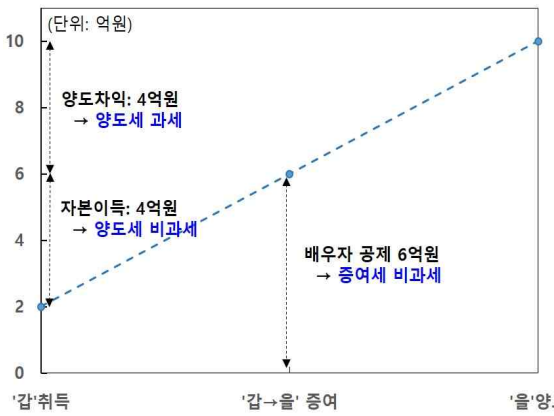
< 사례 >

'**갑**' **주택취득**('15년, 2억원) ⇒ '**갑→을**' **증여**('20년, 6억원) ⇒ '**을**' **양도**('24년, 10억원)
※ '을'은 '갑'의 배우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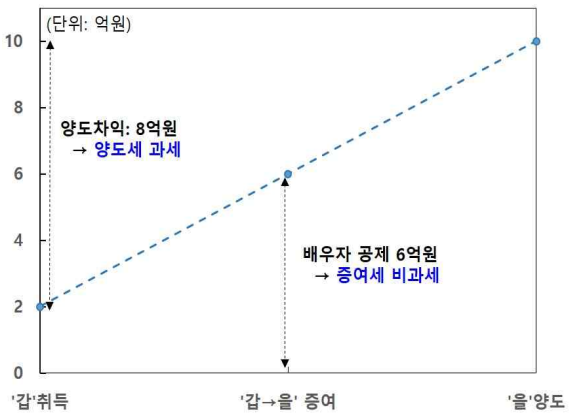
① **이월과세 미적용**: 양도차익 **4억원**(10억원-6억원*) **과세**
* 취득가액 : 증여 당시 증여가액 = 6억원

② **이월과세 적용**: 양도차익 **8억원**(10억원-2억원*) **과세**
* 취득가액 : '갑'의 취득 당시 취득가액 = 2억원

①이월과세 미적용



②이월과세 적용



[3] 간이과세 포기 철회 근거 마련 (상세본 119p)

① 간이과세 제도 개요

□ **(개요)** 기장능력 등이 부족하여 신고·납부 등이 어려운 **소규모 사업자의 납세편의 제고**를 위해 간이과세 제도* 운영

* ('77년) 과세특례제도로 도입 → ('00년) 간이과세제도로 명칭 변경

□ **(기준)** 직전연도 **연 매출액 8,000만원** 미만 개인사업자

※ 연 매출액 4,800만원 미만은 영수증 발급,
연 매출액 4.800만원 이상~8,000만원 미만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

□ **(특례) 매출액만으로 세액계산*이 가능**하며, **연 1회 신고**

* 과세표준(공급대가)×당해 업종별 부가가치율(15%~40%)×10%,

○ 연 매출액 **4,800만원 미만**은 부가가치세 **납부의무 면제**

② 간이과세 포기 철회 도입 취지

□ **간이과세자**는 필요*에 따라 간이과세자 **특례**를 **포기**하고 **일반과세** 적용이 가능하나, **포기 신고 후 3년 동안 계속 적용 의무**

* 거래 특성 상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 등

□ '21년 간이과세 제도 개편*에 따라 **예외적인 경우**에 3년 이내라도 **간이과세 포기 철회**를 **허용**

* (종전) 연 매출액 4,800만원 미만(영수증 발급) → (현행) 연 매출액 4,800만원 미만(영수증 발급), 4.800만원 이상~8,000만원 미만(세금계산서 발급)

○ **세금계산서 발급**이 가능하면서 **세액계산**을 **간편**하게 **적용**받도록 **간이과세 적용**

[4] 천연가스 버스에 대한 부가세 면제 특례 적용기한 종료

(상세본 121p)

① 천연가스(CNG) 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종료 취지

□ 동 특례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매연 배출이 많은 경유버스를 CNG 버스로 대체 보급하기 위한 것으로, **그간 정책 목표 달성***

* '00년 도입되어 현재까지 운용 중으로 '21년 기준으로 전국 시내버스의 약 75%가 CNG 버스임

○ 특히 보다 강화된 환경 개선 목표에 맞춰 **전기·수소차의 보급 확대를 유도**하기 위한 **정부 정책*과의 정합성 유지 필요**

* 저공해차 분류체계 개편('24년 CNG 버스 제외 예정)에 따라 전기·수소전기 버스로의 수요 전환을 위해 CNG 버스 구매지원 예산사업 종료 예정('24년)

□ 동 특례를 종료하더라도 현재 **전기·수소전기버스**에 대해 **부가가치세**를 **면제**하고 있으므로 **신규 수요**는 이를 통해 **보완 가능**

[5]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 확대 (상세본 127p)

①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개요

□ (개요) 거주자·내국법인이 **해외금융기관에 개설·보유한 해외금융계좌정보**를 **신고**하는 제도

□ **(신고 대상)** 신고대상연도의 **매월 말일** 중 어느 하루라도 **모든 해외금융계좌잔액**이 **5억원**을 **넘는 경우**

○ 은행 예·적금 계좌, 증권거래 계좌, 파생금융상품거래 계좌 등 보유한 **현금·주식·채권·펀드·보험·가상자산 등 신고**

□ **(신고의무 면제) 단기 거주 외국인·재외국민**, 공공기관 및 금융회사, 타 법률상 관리·감독이 가능한 경우

□ **(제재규정) 과태료 부과, 명단공개 및 형사처벌** 등

○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**10~20% 과태료 부과**(20억원 한도)

○ **(신고위반금액이 50억원 초과시) 명단공개, 형사처벌*** 가능

*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3~20% 벌금
*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음

○ **(소명요구)** 신고의무 위반시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해 **소명을 요구**할 수 있음(미소명시 20% 과태료)

② 개정 취지

□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**역외탈세 방지, 정보수집** 등을 위해 거주자·내국법인의 해외금융계좌를 신고·파악하는 것으로,

○ 근로·퇴직소득 비과세를 적용받는 **국제기관의 종사자** 및 **조약 등에 의해 설립된 기관**에 대해서도 **신고의무**를 부여하는 것은 **불필요**하여 **신고의무 면제대상**을 법령으로 **명확화**

[6] 용도세율 대상 확대 등 제도개선

(상세본 147p)

① 제도 개요

□ **용도세율 제도**란 수입통관 단계에서는 동일한 물품이나, 통관 이후 **용도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는 물품**에 대해 사전에 세관장에게 **낮은 세율의 적용**을 신청하는 제도

○ **세관당국**은 용도세율을 적용받은 물품이 수입 후 일정기간 당해 용도에 따라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**사후관리***

* 용도외 사용 또는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 추징

○ 현행 관세법은 용도세율 적용대상을 할당관세 등 9개로 한정

1) 적용대상(9개) : 잠정관세, 긴급관세, 특정국물품긴급관세,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, 조정관세, 할당관세, 계절관세, 국제협력관세, 일반특혜관세
2) 제외대상(4개) : 덤핑방지관세, 상계관세, 보복관세, 편익관세

② 개정 내용

□ **용도세율 적용 대상**에 **덤핑방지관세** 등 **4개 탄력세율제도를 포함**하고 관련 **규정 합리화** 등 정비

❶ **(용도세율 적용대상 확대) 덤핑방지관세, 상계관세, 보복관세, 편익관세**에서도 **부과대상을 용도별로 구분**하여 **차등적인 관세율**을 **부과하여 정책효과성 제고*** 및 **납세자 재산권 보장**

* 예) 국내산업 보호를 위하여 수질정화제용 수산화알루미늄에만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면 충분하나, 용도세율을 적용할 수 없어 인조대리석용 수산화알루미늄에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게 되는 문제 등을 정밀하게 해결 가능

❷ **(용도세율 신청 제외 합리화)** '특정 용도로 사용하는 물품으로 미리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(전용물품)' 신청 제외*

❸ **전용물품** 확인 받은 경우 **사후관리 대상 제외**됨을 **명확화**

[7] FTA협정관세 적용 물품의 보정이자 면제사유 명확화

(상세본 156p)

① 보정제도 개요

□ 관세법령에서는 납세의무자가 **납부한 세액을 조기에 확정할 수 있도록 '보정제도'**를 운영

○ 납세의무자가 관세를 **신고납부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**에 과소신고 사실을 알게 된 경우, **세관장에게 세액보정을 신청**하고 그 다음날까지 부족세액 납부(「관세법」 제38조의2)

○ 이 경우 **납세의무자에게 보정이자**를 **징수**하되, 과소신고에 **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** 보정이자를 **면제**

* 「관세법」 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보정신청을 한 날까지의 기간 × 금융회사의 정기예금 이자율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(연 29/1000)

② 개정 취지

□ **FTA 협정관세 적용 물품**의 경우 **보정이자가 면제되는 사유**를 「관세법」이 아닌 **「FTA특례법」** 상에 **명확**히 규정함으로써

○ 납세자의 보정이자 **면제사유**에 대한 **입증부담을 경감**하고 **예측가능성을 제고**하려는 것임

❶ FTA협정관세 적용*에 있어, **수입자 귀책 없는 원산지증빙서류의 오류** 등을 **보정이자 면제사유에 포함**하되,

* FTA협정관세는 수입자가 아닌, 상품을 수출한 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작성·발행한 원산지증빙서류에 따라 적용 여부가 결정됨

❷ **구체적인 면제사유**는 **「FTA특례법 시행령」**에서 정할 계획

[8] 공매제도 개요 (상세본 163p)

① 제도 개요

□ **강제징수** 절차* 중 **세금 체납**으로 **압류한 재산**을 **매각**하는 단계에서 **일반인**에게 압류재산을 **공개 매각**하는 제도

* 체납자의 재산 ①압류 → ②매각 → ③청산

○ 관할 세무서장이 **공매 대행 의뢰** → **한국자산관리공사**가 **공매 대행**하고 **매각대금**을 **배분**하여 **체납액 충당**

② 공매 절차

□ **공매공고** → **입찰** 및 **개찰** → **매각결정** → **매수대금 납부** → **소유권 이전** 및 **금전 배분**

○ **(공매공고) 공매재산 현황, 입찰기간, 개찰일시, 배분요구의 종기, 매각결정기일** 등을 **공고**하고 체납자와 이해관계인에게 **통지**함

○ **(입찰·개찰) 공매보증**을 **제공**하며 **매수신청**을 하고 **개찰일**에 매수신청인 중 **최고가 매수신청인**을 **결정**함

○ **(매각결정) 매수인 제한**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**매각결정기일**에 **최고가 매수신청인**을 공매재산의 **매수인**으로 **결정**

○ **(매수대금 납부)** 매수인이 **매수대금**을 **납부**하면 공매재산을 **취득**하고 **공매재산**의 **권리이전** 절차를 진행함

○ **(배분) 배분기일**에 **매각대금**을 **배분계산서***에 따라 공매재산과 관계되는 **체납액**과 **채권**에 **배분**함

* 공매재산의 매각대금 등을 체납자, 채권자 등에게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적은 문서

[9] 공매재산 취득 시 매수대금의 상계제도 신설 (상세본 165p)

① 도입취지 및 내용

□ **(취지) 압류재산 매수 부담 완화** 및 **강제징수 기간 단축**

□ **(내용)** 압류재산의 **매수인**이 **채권자**인 경우 **매수대금**을 **완납**하지 않고 매수대금에서 **채권액**을 **상계**한 금액을 **납부**할 수 있도록 함*

* 현재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의 경우 매수대금 상계 가능

② 제도 개요

□ **매수인**이 공매재산의 **채권자**인 경우 매수대금 납부 시 **매수대금**에서 **채권액**을 **차감한 차액만 납부**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

○ **(대상) 공매 부동산**에 대해 **저당권, 전세권**을 **설정한 자** 및 **등기된 임차권**이 있거나 **대항력**이 인정되는 **임차인*** 등

* 「주택임대차보호법」 §3의2② 또는 「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」 §5②에 따라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이 있는 임차인

○ **(신청기한) 개찰일 이후 매각결정기일 전**까지

○ **(상계결정) 매각결정기일**에 **상계 여부 결정***

* 배분순위에 비추어 실제로 배분받을 금액이 없는 등 사실상 차액 납부가 불가능한 경우 차액 납부 불허

○ **(납부방법) 배분계산서* 원안**에 따라 납부할 **차액**을 **계산**하고 **배분기일**까지 **차액 납부**

* 공매재산의 매각대금 등을 체납자, 채권자 등에게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적은 문서

○ **(이의제기) 배분계산서 원안**에 대해 다른 채권자의 **이의제기**가 있는 경우 **매수인**은 **배분기일**까지 이에 **해당하는 대금 납부**

〈 상계제도 도입 시 공매절차 흐름도 〉

